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Development Process of *Sibok* and *Sangbok* for Officer in *Joseon* Dynasty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5. 2. 14 투고)

ABSTRACT

A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Sangbok*(常服) and *Sibok*(時服) for officers in *Joseon* Dynasty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classification results in four distinct periods according to the usage of *Sangbok* and *Sibok* as well as their colors and naming: 1) the mixed usage period, 2) the usage-differentiation period, 3) the name-differentiation period, and 4) name-reversal period. During the mixed usage period which lasted until the early 15th century, *Sangbok* and *Sibok* were used with no distinction. In the usage-differentiation period, the King *Sejong* first made a regulation on the use of colors of *Dal-lyung* according to the occasion and black colored uniforms were used only for daily cabinet meetings. In the 16th century, the names of *Sangbok* and *Sibok* began to be used distinctively: *Sangbok* for formal clothing in black color and *Sibok* for ordinary clothing in pink color. This period is defined as the name-differentiation period in this paper. In the name-reversal period which begun around the 17th century, the usages as well as the colors of *Sangbok* and *Sibok* are totally reversed because of some confusions of the understanding on the previous government publications. However, the distinction of formal clothing and ordinary clothing remained.

Key words: 常服(*Sangbok*) 時服(*Sibok*), 團領(*Dal-lyung*), 官服(official uniform), 朝鮮(*Joseon* Dynasty)

I. 머리말

조선시대 백관(百官)들이 착용하였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은 관복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 공복(公服)과는 용도상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백관들의 관복으로, 고려 말 우왕 때 받아들인 명(明)의 관복제도에서 비롯되었다.¹⁾ 단령에 사모를 쓰고 품계에 따라 서(犀)·금(金)·은(銀) 등의 품대(品帶)를 두르며 흑화(黑靴)를 신는데 특히 상복은 흑단령에 홍배를 장식한 것이고 시복은 홍단령으로 홍배 장식이 없는 것으로 개략적인 정리²⁾

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복과 상복의 용도 차이는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색상 변화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시복과 상복의 명칭과 색상에 관한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시대는 중종대부터 선조대라는 한정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시복의 색상이 아청색이라는 견해³⁾가 일찍이 제기되었으며 또 다시 16세기의 시복 색상이 흑색이었다고 보는 연구⁴⁾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시복=홍단령'이라는 학계의 통념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와 문헌자료, 그리고 회화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시복과 상복의 색상과 명칭의 혼란문제를 용도에 따른 단령의 색상분화와 그에 의한 명칭 분화, 그리고 명칭의 반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복과 상복 명칭의 반전이 일어나는 17세기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그 이후 국말까지의 변천양상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시복과 상복의 변천양상에서 명칭의 반전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적어도 용도와 색상면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백관복 개념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전통 사극물이나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위한 복식증구에 활용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시복과 상복의 개념정립을 위한 선행과제

1. 상복과 시복에 대한 학계의 통념과 보완 방향

지금까지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이 사모와 단령, 품대, 그리고 화로 구성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상복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흑

색(아청색·현록색) 계통이며 시복은 홍색(담홍색·홍색) 계통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논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조선 전시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는 17세기 이후라는 점이다.

또한 상복의 용도는 대략 평상시 집무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색상은 공복과 같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근래의 한 저서⁵⁾에서 '상복은 국가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한 옷으로 색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지적은 종전의 상복 용도가 집무복이라는 견해, 그리고 상복의 색상이 공복의 색상과 같다고 보는 견해와는 분명 차별된다. 이러한 전환의 실마리는 조선시대 단령의 위상을 밝히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시도되었던 연구⁶⁾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근거하여 명대(明代)에는 잡색(雜色)의 단령(상복)을 사용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복식제도를 제정할 때 명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조선 백관의 상복 제도에 그대로 수용됨으로서 상복의 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논지로 연결된다. 또 다른 저서⁷⁾에서도 조선 초기 상복 단령의 색은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모두 상복의 색상에 대한 통념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시복에 대한 언급은 상복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시복'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대체로 시복은 임시할 때 또는 공무를 볼 때 입는 옷으로, 상복과 형태는 같지만 흉배를 달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색상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에는 흑색, 후기에는 홍색·담홍색, 또는 상복색과 시복색이 때때로 달라지는데 서로 반대로 바뀌었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 단령의 용도에 대한 것이다. 시복과 상복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단령의 색상 문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명칭과 색상 혼란의 원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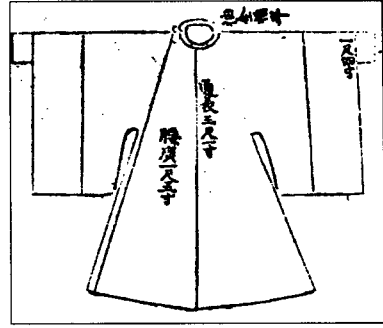
이다. 아울러 상복 단령의 색상이나 형태가 공복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상복과 공복의 색상과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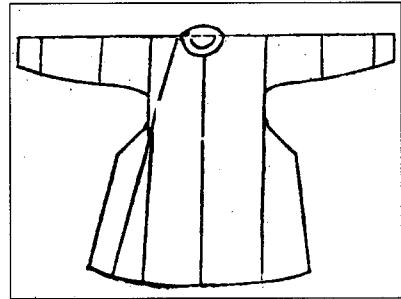
공복과 상복은 용도가 다르다는 점, 또한 복두와 사모로 관모 역시 분명하게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포(袍)의 색상이나 형태가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태종대에 이미 조선의 관복제도는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따른다⁸⁾고 하였으니 조선의 상복제도도 명(明)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홍무(洪武) 3년(1370)에 백관의 상복에 해당하는 상조시사(常朝視事)의 옷을 '공복'이라 하여 오사모(烏紗帽), 단령삼(團領衫), 속대(束帶)로 정하였다. 그러나 홍무 26년(1393)에 공복제도가 비·청·록(緋·靑·綠) 색상의 '반령우입포(盤領右衽袍)'로 정립되면서 초기에 제정되었던 단령삼 제도는 상복제도로 정착되었다. 이 때 상복 단령삼에는 잡색(雜色)의 저사·능·라·채·수(紵絲·綾·羅·綵·繡)가 허용되었다. 단지 현·황·자(玄·黃·紫) 3색에 용·봉문(龍·鳳文)의 직조나 자수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⁹⁾ 따라서 조선 초기에 명의 복제(服制)를 수용했던 만큼, 공복에서는 품계에 따라 홍·청·록(紅·靑·綠) 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상복의 색상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포(袍)의 형태도 크게 달랐다.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학봉집(鶴峰集)』에 공복은 반령(盤領)에 대수(大袖)이며 길이는 뒤꿈치에 이르는데 겨드랑이 아래에 무[裾]가 있다¹⁰⁾고 언급되어 있고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에는 악사(樂師)의 녹초삼(綠綵衫)이 강공복(絳公服)과 제도가 같다¹¹⁾고 했는데 강공복이라는 것은 곧 1~3품이 착용하는 『경국대전』의 홍포(紅袍)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복은 등근깃에 소매가 넓고[廣袖] 밑자락이 퍼진 형태이다. 고려시대 불화 등을 참조해 볼



<그림 1> 15세기 공복
(『樂學軌範』 卷九 綠綵衫)



<그림 2> 15세기 단령(시복·상복)
(『樂學軌範』 卷九 黑團領)

때 옆트임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상복은 <그림 2>처럼 등근깃에 소매가 좁고[窄袖] 트인 옆선에 주름잡힌 무가 달렸다.¹²⁾

이처럼 공복과 상복의 형태는 등근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매 너비나 무(武)의 방식 등에서 크게 다르다. 또한 공복은 홍·청·록이라는 품계별 색상 규정이 있었지만 상복 단령은 특정 색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즉 잡색(雜色) 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공복과 상복은 형태와 색상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복과 시복 개념의 근원적 애매성

상복이나 시복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고 인식되는 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 시복과 상복 모두, 왕과 왕세자 이하 서민 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그 복식이 달라서 복잡하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의 시복이나 상복에서조차도 '단령', '의(衣)', '흑의(黑衣)'¹³⁾ 또는 '흑단령(黑團領)', '흑원령(黑圓領)', '예복(禮服)', '홍단령(紅團領)', '홍의(紅衣)', '담홍포(淡紅袍)', '상단령(常團領)'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전후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했다는 것도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 왕이나 왕세자의 시복 개념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용어 자체의 해석에서 혼돈이 있었다¹⁴⁾고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이 변화는 어휘가 지닌 근원적인 애매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복'이라는 어휘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의 개념이 중요한 반면, '시복'은 본질적으로 '특정 시점(時點)에서의 옷', 즉 '상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관복으로의 상복은 애초부터 법으로 정해진, 백관의 일상적인 관복이므로 개념이 분명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형상을 지닐 수 있는 반면, '시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옷이므로 다분히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시복은 여러 가지의 옷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단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복 개념의 본질적인 복잡성은 조선 초기에는 물론, 후기까지도 지속적인 논의의 원인이 된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내려진 잘못된 해석에서 또 다른 오해가 야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 시복이 특정 상황과 관련된 예복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역시, 잘못 적용된 의미의 확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에 복식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된 시점부터는 백관의 상복과 시복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용어의 근원적 애매성이 있을지라도 관복의 용도에 주목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설득력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조선시대 시복과 상복의 제도변천

전통사회의 관복제도는 뚜렷한 용도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조선 초 태조대(太祖代) 이후 제정되기 시작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성종 16년(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의장(儀章)」 부분에 조복과 제복, 그리고 공복, 상복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복은 삭일(朔日) 조회와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조회에,¹⁵⁾ 제복은 사시(四時)의 조묘(祖廟)와 사직(社稷)·적전(籍田)·문묘(文廟) 등의 제사(祭祀)에 사용되며,¹⁶⁾ 공복은 초하룻날의 조하(朝賀) 및 사은(謝恩), 서계(誓戒), 설과 동지날 세자궁에 하례(賀禮)할 때, 외임관리가 하직하고 복명(復命)할 때, 신관이 처음 본사(本司)에 올라와 상관을 뵈고, 소속관리가 당상관을 예현할 때 착용되었다.¹⁷⁾ 그리고 상복은 관리로서의 평상시 집무복으로는 물론, 조회나 조계(朝啓), 동궁에게 조참하는 날 등, 대소 조회에 널리 착용되었다.¹⁸⁾

상복은 조복과 공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은 낮았지만 가장 많이 착용되었던 만큼, 제도의 변천이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용도에 의해 색상의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색상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후에는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 부여되었다. 다시 부여된 명칭이 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로 정리된다.

1. 용도 미분화기(15세기 전기)

용도 미분화기란 명칭 미분화기라고도 할 수 있다. 상복과 시복이라는 어휘가 구분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시기로서, 대체로 조선 건국 이후 세종 28년(1446)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조선 초의 실록에서 관리들의 단령 자료를 살펴보면 '상복'이라는 기록보다는 '시복'이라는 기록이 먼저 확인된다.¹⁹⁾ 뿐만 아니라 어휘 사용 횟수에 있어서도 '시복' 쪽이 오히려 우세한 편이다. 본 연구의 논제에서 '시복'이라는 용어를 먼저 제시하게 된 것도 조선 전기에 확인되는 시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국가의 의례복과 관련된 규정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초 시복과 상복의 명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본 연구자의 가설은 번고가 없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의례에 사용된 복식의 명칭을 비교해 봄으로써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사신을 맞을 때 백관이 착용하는 복식을 살펴 보면 『실록』의 일반 기사에는 '시복'으로 맞이한다²⁰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례의』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상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다. 또 『실록』에는 칙서(勅書)를 맞이할 때 '시복'을 입는다²¹고 하였으나 『오례의』에는 동일 상황에 역시 '상복'을 입는다²²고 기록되어 있다. 왜 동일한 상황에 복식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시복', '상복'이라는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록에는 주로 '시복'이라는 용어를, 세종대의 『오례의』나 1475년에 재정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주로 '상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사용에 차이가 생긴 연유는 명칭 사용과 관련된 당시의 조정(朝廷) 분위기, 또는 기록이나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참고한 법전(法典)이나 예전(禮典) 등의 자료, 또는 편찬자의 용어에 대한 기호(嗜好)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3년(1394)에 사·라·능·기(紗·羅·綾·綺)과 같은 수입품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등²³ 근검·절약정책을 전개하였으나 관원의 품대는 예외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 11년(1411)에 관리들의 검소함이 지나쳐 남루해 보임에 따라 조회(朝會)에 회색·옥색 옷을 금하고 채의(彩衣)를 입도록 규정하였다.²⁴ 동왕(同王) 14년에 다시 옥색 옷을 금하면서 짙게 물들여 입으라²⁵고 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관리들의 관복, 즉 단령의 색상을 규제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듬해에는 여름철 관복에 심남색(深藍色)과 홍색, 흑색을 사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²⁶ 2년 뒤인 1418년에는 각사(各司) 관복이 모두 초·단(綃·段)이지만 색깔이

없으니 하사하는 홍단(紅段)으로 관복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해주라²⁷고까지 하는 등, 태조 이후 조정의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짙은 색상의 고급직물로 만든 단령을 착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태조 이후 세종 때까지도 단령 '상복'과 '시복'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용도는 조복과 공복을 사용하는 의례 외의 나머지 대소 의례에 착용하는 '의례복'으로는 물론, 일상적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무복'을 겸하여 착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령의 색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으나 조정의 위의(威儀)와 문채(文彩)를 위하여 회색이나 옥색 등의 짙은 색상을 금하고 홍색과 같은 짙은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용도 분화기(15세기 후반)

1) 의례용 흑단령 제도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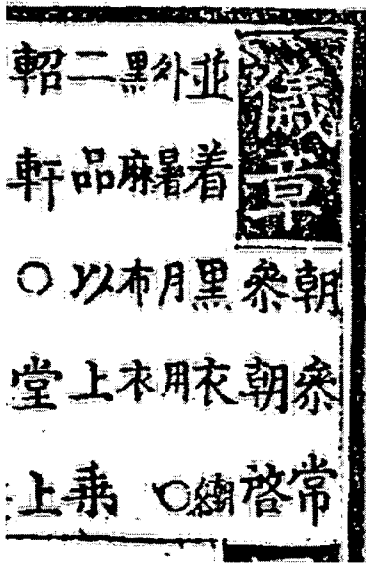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상복'과 '시복'이 여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용도에 의해 단령의 색상이 분화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 서민의 단령 착용을 금함²⁸으로써 단령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왕 6년(1424)과 11년(1429)에는 태종 때와 마찬가지로, 사신을 영접할 때나 대소 조회에서는 소복(素服)에 가까운 토홍색과 옥색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시에도 짙게 염색한[深染] 옷을 입도록 하였다.²⁹

한편 세종 11년(1429)에는 매일 아침 관원들을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상참제도(常參制度)가 완성되었는데 상참의(常參儀)에는 상복을 입었으며³⁰ 동왕 25년(1443) 세자가 조참을 받을 때는 세자와 종실(宗室), 문무군신(文武群臣)이 모두 시복 차림으로 거행한다³¹고 하였는데 이 때의 시복은 곧 상복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동왕 28년(1446) 1월에 조계(朝啓)와 조참(朝參) 등에 상복을 입으니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이 없다고 하여 중국의 제도에 따라 검게 염색한[黑染] 조의(朝衣)를 만들어 조회 때 입도록 하였다. 특히 당상관 이상은 단자(段子), 사·라(紗·羅)로 만들고 3품 이하의 관원은 본국

의 포물(布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³²⁾ 품계에 따라 소재에 차등을 두었다.



〈그림 3〉 흑의·흑단령(1476년)
(이강철 외, 2003:63)



〈그림 4〉 黑衣(1485년)
(『經國大典』卷三「儀章」)

세종 28년에 내리진 '흑염 조의(黑染 朝衣)' 규정

은 상복·시복 제도의 분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흑염'을 한 '조의'의 시작이 곧 '흑의', '흑단령'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조참이나 조계 등과 같은 의례에 사용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것이므로 용도에 의해 단령의 색상과 소재가 분화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의의 소재는 당상·당하관을 구분하여 당상관은 고급소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당상관과 당하관 복식에 적용되는 소재의 차등원칙은 조선후기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세조 13년(1467)의 적개공신(敵愾功臣)인 손소(孫昭, 1433-1484)나 〈그림 3〉의 오자치(吳自治, 생몰미상) 영정에 보이는 단령은 세종대의 '흑염 조의'에서 비롯된 예복용 '흑의(흑단령)'인데 '시복'이나 '상복'이라는 명칭이 모두 가능한 옷이다.

그러나 성종 19년(1488)의 실록 자료를 보면 조참 때의 흑의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참에 반열(班列)하는 백관의 복색이 다갈(茶褐)과 아청을 섞어 입어 그 색이 통일되지 않으니, 흑단령을 입도록 함이 좋겠다³³⁾는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 다갈색이나 아청색이 모두 짙은 색상이기는 하지만 다시 흑색(아청색)으로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그림 4〉에서 확인되듯이, 『경국대전』 「의장」의 머리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흑의(黑衣)'라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참, 상참·조계에 흑의를 입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세종 28년의 '흑염 조의'와 그 용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경국대전』이 편찬된 시기는 상복과 시복이라는 용어의 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시복'이라는 어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복(=시복) 중에서 흑색 단령만을 조참, 상참 같은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흑의'는 『경국대전』에 제시된 용도 외에, 칙서를 받을 때, 회례연(會禮宴)이나 사신(使臣)을 영접할 때, 그리고 제관(祭官)이 향(香)을 받을 때와 같은 국가 의례에 사용되었다.³⁴⁾ 또한 관리들이 진현할 때³⁵⁾와 중국에 사신으로 입조(入朝)할 때³⁶⁾도 착용되었다.

'흑의'라는 명칭은 이듬해인 동왕 3년(1472) 기록

에 '흑원령(黑圓領)³⁷⁾으로, 또 '흑단령³⁸⁾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리고 성종 6년(1475), 배릉(拜陵)에 어가(御駕)를 호종하는 제신(諸臣)의 복색을 논의하면서 세종대에는 '예복(禮服)'을 입었다고 하였으며 당시 '백관의 예복이 흑단령이었다'고 하는 후일의 기록³⁹⁾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흑단령을 '예복'이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의 의례용 단령인 '흑염 조의'가 집무용 단령인 상복과 구분되면서 '흑의', '흑단령', '흑원령', '예복' 등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집무용 단령의 잡색(雜色) 제도 유지

15세기 후반은 흑단령을 입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여러 색상의 단령을 입을 수 있었던 시기이다. 당시의 잡색(雜色)에 해당되는 상복의 색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국한 이래로 문무조관이 모두 회색 단령을 입었다'⁴⁰⁾는 기록을 볼 때 국초부터 '회색' 단령을 즐겨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종대에 홍색, 심남색, 흑색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회색'과 '옥색', '토홍색' 단령이 흔히 입혔음을 보았다. 또한 세종 27년(1445)에 승지(承旨)들에게 압두록무명[鴨頭綠綿]과 홍색 명주[紅紬]를 하사하면서 중국 제도에 의거하여 옷을 만들어 입도록⁴¹⁾ 하였다고 하는데 전후맥락을 통해 당시 중국제도에 의거하여 만들 옷은 단령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에 압두록색과 홍색의 단령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감다갈(甘茶褐), 아청, 초록색이 사용되었음⁴²⁾이 확인된다.

단종 2년(1454) 5월에 조계·상참 이외에 토홍색을 입게 했던 규정⁴³⁾이 보이기는 하지만 성종 초년에 아청, 목홍, 초록으로 관복색을 제정했다⁴⁴⁾는 기록도 보인다. 『경국대전』 「의장」 머리 부분에 의례용 상복인 '흑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중에 제시되어 있는 상복 제도는 '집무용 단령'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상복 색상은 흑색을 제외한 잡색일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종 16년(1485년)에는 아무런 금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관들이 스스로 토홍색

단령을 즐겨입는 것에 대한 우려의 기록이 보인다. 그리하여 토홍색 때문에 조정의 문채(文彩)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한 성종은 재차 잡색을 사용하도록 명하였다.⁴⁵⁾

연산군대(燕山君代)에도 흑색이나 아청색,⁴⁶⁾ 그리고 토홍색⁴⁷⁾ 단령이 확인된다. 의례용 단령의 색상인 흑색, 즉 아청색을 제외하면 남은 토홍색은 집무용 단령의 색상이다. 다른 색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경국대전』의 잡색제도는 관행에 의해 토홍색으로 단순화되어 간 것이라고 하겠다.

3) 모든 색상의 단령에 달아야 했던 당상관용 흉배

단종 2년(1454) 6월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건의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상복의 흉배제도는 종친의 흉배 사용을 시작으로 12월 10일에 비로소 당상관들의 단령에 달게 되었다.⁴⁸⁾

성종대의 『경국대전』 상복제도는 모든 색상의 단령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상관들은 단령의 색상에 관계없이 흉배를 달아야 했다. 『경국대전』의 상참·조참용 '흑의' 부분에 흉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림 3>처럼 당상관은 흑의에 흉배를 달았을 것이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초상화에는 문관 3품용 백한흉배(白鵬胸背)를 달고 있는 녹색 상복이 보인다. 그가 3품이었던 시기와 흉배제정 시기를 맞추어보면 초상화에 그려진 복식은 단종 말년에서 세조 즉위 초에 해당되는 1455년⁴⁹⁾의 것이 되는데 당시의 녹색 단령은 의례용이 아닌, 집무용 단령이었다. 따라서 신숙주의 초상화는 색상에 제한없이 흉배를 달았던 초기의 상복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⁵⁰⁾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16년(1485)에도 흉배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같은 해의 실록 기사에는 당시 흉배를 장만하기 어려워서 예연(禮宴)에 참석할 때조차 흉배를 달지 않기 때문에 상의원(尙衣院)에서 값을 받고 직조하여 주기로 하였다⁵¹⁾는 내용이 보인다. 당시 당상관들조차도 흉배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서인지, 조회나 연향 등에 착용하는 흑단령에만 흉배를 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록(李

陸, 1438-1498)의 『청과극담(靑坡劇談)』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된다. 즉 '세조가 등극하여 단자(段子)로 단령을 만들어 입고 홍배로 품계를 구분하도록 했는데 조회에 참석할 때만 입었다. 요즈음(성종대)도 예연(禮宴)이 아니면 입지 않는다'⁵²⁾는 것이다.

평상시 집무용 단령의 잡색제도가 토홍색을 즐겨 입던 당시의 관행에 의해 상복 홍단령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례용 흑단령은 물론, 모든 색상의 집무용 단령에까지 홍배를 달도록 한 제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의례용 흑단령에만 홍배를 다는 관행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관복제도에서 '명문법(明文法)'보다는 관행에 의한 '불문법(不文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명칭 분화기(16세기)

의례용인 흑단령을 '예복' 등으로 구분하려는 조짐은 이미 성종대에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흑단령을 '시복'으로 명칭하고 있는 경우는 『악학궤범』⁵³⁾으로 추정된다. 연산군대 기록에도 홍배를 단 중국 단령에 '시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례는 중종 13년(1518년)에 보인다. 이 때 비로소 '시복'은 '아청색'⁵⁵⁾이라 하여 시복이 흑단령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보인다. 동왕 15년(1520) 기록에 의하면 '상참, 조참, 배사시에는 시복 흑단령을 착용하고 경연과 같은 다소 편한 자리에서는 상복을 착용한다'⁵⁶⁾고 하여 시복과 상복의 용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중종대 이후인 16세기에 흑단령이 '시복'이라고 불리어졌다는 것은 『실록』 외에도 16세기 말 『학봉집(鶴峰集)』⁵⁷⁾이나 임란 직후의 『지봉유설(芝峰類說)』⁵⁸⁾에서 확인된다. 즉 이들 자료에서는 시복이 흑단령이고 상복은 홍단령이라고 하였다. 홍단령은 '상단령(常團領)⁵⁹⁾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홍단령은 기록화(記錄畵)에서 담홍색 또는 천홍색으로 흔히 확인되는데, 이는 임란 전후의 기록에 보이는 '토홍색' 단령이다.

『학봉집』에는 시복과 상복의 소재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시복 흑단령에는 금(錦), 견(絹), 면포(綿布)가 사용되고 상복 홍단령에는 견과 면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시복인 흑단령에 고급 옷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예복, 즉 의례복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복인 홍단령은 평상시 집무복이므로 소박한 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경자년(1600)에는 중국제도를 수용한 흑단령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임란 전 입었던 당상관의 담홍색 단령[淡紅絹表單]과 당하관의 심홍색 단령[深紅綿布表單]이 왕의 곤룡포(袞龍袍)와 색상과 비슷하여 군신의 구별이 안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이다.⁶⁰⁾ 그런데 중국상인들이 아청 비단[鴉靑及束絹]을 많이 들여와 당상관과 당하관이 모두 사·견(絲·絹) 단령을 착용하게 됨에 따라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관리들간의 존비 구별이 어려워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 연유에서 신축년(1601) 의인왕후 상(喪)의 석복(釋服) 시기에 맞추어 검소함을 중시했던 선대의 뜻을 받들어 홍단령 제도를 다시 부활시킴에 따라 다시 임란 전의 시복제도와 상복제도가 복구되었다. 백관의 홍단령 제도를 부활한 대신, 군신 간의 복색을 구별하기 위하여 백관은 짙은 홍색을 입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였다.⁶¹⁾

중종대와 선조대의 공신상(功臣像)에 보이는 흑단령은 당시의 '시복'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시복인 흑단령에만 홍배를 다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16세기 정국공신상인 이우(李瑀)나 <그림 5>의 권응수(權應銖) 초상화(1604)⁶²⁾ 등에서 당시의 시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중묘조 서연관사연도(1535년 행사)」⁶³⁾나 「농암 이현보 영정(1537)」, <그림 6>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 1550)」⁶⁴⁾ 「서충대친림사연도(1560년 행사)」나 「기영회도(耆英會圖, 1584)」 등에서는 당시의 상복인 홍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 「중묘조 서연관사연도」나 「서충대친림사연도」처럼 당상관의 담홍색 상복과 당하관의 심홍색 상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묘사된 경우도 확인된다.

'연회'라고 하여 모두 흑단령을 입는 것은 아니었다. 계회도나 연회도에 나타나는 상황도 일종의 '연



〈그림 5〉 시복 흑단령(1604년)
(국립진주박물관, 1997:95)

회'이기는 하지만 관리들의 사사로운 연회이므로 흑단령을 입을 수 없었다. 또한 왕이 함께 하는 '친림(親臨)' 연회라고 하여도 반드시 흑단령을 입는 것은 아니었다. 16세기의 「서종대 친림사연도」처럼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한 연회에서도 신하들은 평상시 단령인 홍단령을 입었다. 이는 왕이 참석하였어도 사사로이 마련된 연회이기에 관리들이 그대로 상복 홍단령을 입고 있는 것이다. 즉 흑단령은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례에만 착용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들은 출근할 때 보통 상시 집무복인 상복 홍단령을 입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상참례와 같은 의례가 있을 때는 예복인 '시복 흑단령'으로 출근하여 의례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의례가 끝나면 소속 관청으로 돌아가 다시 상복 홍단령으로 갈아입었는데, 이러한 개복(改服) 과정은 16세기 후기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⁶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명칭 반전기(17세기 이후)

임란 후인 선조 34년(1601) 당시만 해도 '시복'과 '상복'이 각기 '흑색'과 '홍색'으로 색상이 다르고 용도가 다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광해군 2년(1610)의 조정 논의에서 16세기 내내 시복으로 불리어오던 '흑단령'이 '상복'으로 규정되는 대변혁이 일어난다. 세속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대치됨을 인정하면서도 '흑단령'을 '상복'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의 흑단령은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도 하는데, 비록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알성할 때에 이른바 유생들의 상복과 중국 사신이 올 때의 이른바 백관의 상복은 분명 흑단령입니다. 감히 아뢰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⁶⁶⁾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에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讀卷官)과 대독관(對讀官)은 모두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해서 의주(儀註)를 마련했습니다. 세속에서 홍단령을 상복이라 하고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합니다만, 『오례의』에 기재된 것을



〈그림 6〉 상복 홍단령(1550년)
(湖巖美術館, 1996:92)

보면 흑단령 차림을 상복으로 삼은 곳이 매우 많은데, 가령 직사를 영접할 때의 의례라든가 조참·상참 등의 의례 그리고 배표(拜表)할 때 입는 사자(使者)의 복색 모두를 상복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 본다면, 이번에 알성(謁聖)하고 인재를 뽑을 때 독권관 이하의 복색을 상복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흑단령 차림으로 입시하는 셈이 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⁶⁷⁾

사헌부 전원이 모두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복색이 흑의를 시복이라 하고 홍의(紅衣)를 상복이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생각으로는, 평상시 입는 홍의로 성례(盛禮)를 배종하는 것이 미안할 것 같아 다시 수의하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조에서 회계한 사연을 보니, 신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일을 논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신들을 채직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⁶⁸⁾

당시 예조판서는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47세의 이정구(李廷龜, 1564-1635)였다. 그는 세속에서 시복이 흑단령이고 상복이 홍단령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상복’을 ‘흑단령’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헌부가 이정구의 판단에 동조함에 따라 ‘흑단령’이 ‘상복’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단령은 어쩔 수 없이 ‘상복’이 아닌, ‘시복’으로 지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광해군 2년에 중종대 이후 선조대까지인 16세기, 즉 1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던 시복과 상복 개념이 180도로 바뀌면서 명칭이 반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복과 상복의 명칭이 반전된 17세기의 상복 흑단령과 시복 홍단령의 모습은 <그림 7>⁶⁹⁾, <그림 8>⁷⁰⁾과 같다.

명칭이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말 고종대에 흑단령 하나로 통일되기 이전까지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 있다. 즉 세종 28년에 시작된 ‘의례용(儀禮用)’과 ‘집무용(執務用)’이라는 단령제도의 ‘이중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후일 색상에 사소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의례용 단령은 여전히 흥배를 장식한 고급소재의 ‘흑단령’을 기본으로 하며 집무용 단령은 흥배없이 소박한 소재를 사용한 ‘홍단령’을 기본으로 함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림 7> 상복 흑단령(1624년)
(이강철 외, 2003:143)



<그림 8> 시복 홍단령(1652년)
(윤진영, 2003:138)

지금까지 용도에 의한 색상의 분화, 색상 분화에 의한 명칭 분화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시복과 상복의 발전양상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명칭이 반전된 이후의 변천양상에 대해

〈표 2〉 조선시대 시복과 상복 제도의 발전양상

발전 양상	용도 미분화기 (15세기 전기)	용도 분화기 (15세기 후기)		명칭 분화기 (16세기)		명칭 반전기 (17세기 이후)	
	태조~세종28년	세종28년~성종말		성종말~광해군 2년		광해군 2년 이후	
용도	공용 (의례·집무)	의례용	집무용	의례용	집무용	의례용	집무용
색상	잡색 (옥색, 회색, 토홍색, 심남색, 흑색, 홍색 등)	흑색 (아청색)	흑색 외의 잡색 (압두룩, 홍색, 감다갈, 초록, 토홍색 등)	흑색 (아청색)	홍색 (담홍색 對 심홍색)	흑색 (아청색)	홍색 (담홍색)
명칭	시복=상복	시복=상복		시복	상복	상복	시복
비고		· 세종28년(1446) 常參· 朝參用 '黑染 朝衣' 시작 · 『오례의』· 『국조오례의』 常服(=시복) 기록 · 단종2년(1452) 흉배제정 · 『경국대전(1485)』 黑衣·常服		· 『악학궤범(1493)』 협률 랑, 시복(흑단령 추정) 착용. · 중종 13년(1518) '시복' = '아청색'		· 광해군 2년(1610) 예조판서 이정구가 『오례의』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홍단령은 '시복'이 됨	

서는 후속연구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소 혼란스럽게 이해되었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제도, 즉 시복과 상복 제도에 대한 변천양상을 용도에 의한 색상의 분화, 색상에 의한 명칭 분화, 그리고 명칭의 반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복과는 색상이나 형태에서 전혀 다른 것에서 출발된 단령제도는 시복과 상복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닌 근원적 애매함 때문에 그간 연구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용도 분화의 관점에서 색상과 명칭이 발전되어 가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네 단계로 정리될 수 있었다.

제1기는 '용도 미분화기(15세기 전기)'이다. 이 시기의 단령은 제복과 조복, 공복을 착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입혀지는 다목적용 관복이다. 또한 색상의 규제가 없는 잡색(雜色) 단령을 사용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명칭에 있어서도 '시복'과 '상복'의 구분이 없었는데 동일의례에서 사용된 복식의 명칭을 분석한 결과, 시복과 상복 명칭이 동일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색상의 규제

는 원칙적으로 없었으나 태종대 이후 조정의 위의(威儀)와 문채(文彩)를 위하여 회색이나 옥색, 토홍색과 같은 옅은 색상을 금하고 짙은 색상의 채의(彩衣)를 권장하면서 심남색, 홍색, 흑색을 사용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제2기는 '용도 분화기(15세기 후기)'이다. 상참(常參)·조참(朝參)에 입을 의례용 '흑염 조의(黑染 朝衣)' 규정을 마련한 세종 28년 이후, 성종 말까지의 반 세기에 해당된다. 색상에 의해 '의례용'과 '집무용'이라는 단령으로 용도가 분화되면서 조선시대 단령제도의 '이중구조(二重構造)'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좋은 소재의 흑색 '조의(朝衣)'가 '의례용 단령'으로 정착되면서 집무용 '상복'과 구분되어 '흑의', '흑단령', '예복' 등으로 지칭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례의』에는 명칭이 분화되기 이전이므로 의례용 단령을 '상복'이라고 명명하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에서는 '상복'과 함께 의례용 단령인 '흑의'를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10여 년 후인 1493년의 『악학궤범』 중에는 시복과 상복의 명칭이 분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한편 '집무용 단령'에는 흑색을 제외한 잡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세종대에는 압두룩이나 홍색, 감다갈, 초록색 등이 즐겨 사용되었으며 성종

대에 이르러서는 토홍색으로 단일화되어 갔다. 그리고 단종 2년에 제정된 당상관의 흉배제도는 용도에 무관하게 당상관의 모든 단령에 적용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에만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3기는 '명칭 분화기(16세기)'인데 1490년을 전후한 성종 말년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중종대에는 구체적으로 의례용 단령인 아청색의 흑단령을 '시복'으로, 집무용 단령인 홍단령을 '상복'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의례용인 시복 흑단령은 아청색의 고급직물을 사용하였으며 흉배를 달아 더욱 문채가 있도록 하는 대신, 집무용인 상복 홍단령은 홍색으로 단일화되면서 견이나 면 등의 소박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제4기는 '명칭 반전기(17세기 이후)'이다. 광해군 초(1610)에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결론내림으로써 조선 후기에 상복을 흑단령으로, 시복을 홍단령으로 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명칭만 반전되었을 뿐, '의례용'과 '집무용'이라는 단령제도의 이중구조, 그리고 용도에 따른 일관성 있는 색상 유지는 관복제도가 간소화되는 고종대까지 지속되었다. 즉 의례용 단령인 흑단령은 조참이나 상참·조계, 그리고 칙서를 받을 때, 회례연이나 사신을 영접할 때, 제관이 향을 받을 때, 관리들이 진현할 때, 중국에 입조할 때와 같은 특정한 국가 의례에 사용되었으므로 고급소재에 흉배장식까지 더하여 조정의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집무용 단령인 홍단령은 잡색에서 토홍색으로 정착되면서 검소함을 중시하여 흉배는 물론 달지 않았으며 소재도 소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의 변천양상의 윤곽이 잡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명칭이 반전된 이후의 발전양상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전통 사극물이나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위한 복식고증의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高麗史 卷一百三十六 二十四 b4-5.
- 2) 모든 관련자료들을 열거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표적인 성과물들을 저자 이름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金英淑 編著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 235. ② 백영자, 최해울 (2004), 한국 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 199. ③ 石田普 (1971), 韓國服飾史, 서울: 寶齋齋, p. 94. ④ 안명숙, 김용서 (2001),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p. 90. ⑤ 劉頌玉 (1998),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pp. 225-226. ⑥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敎文社, pp. 213-215. ⑦ 李京子 (2003), 우리 옷의 傳統樣式,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159.
- 3) 이은주 (1994),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韓國衣類學會誌, 18(1), pp. 125-126.
- 4) 최지희 (2002), 著英會圖에 나타난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 5)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편 (2001),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문화관광부, pp. 63-67.
- 6) 김미자 (1980), 中國의 團領에 대한 研究, 服飾, 3, pp. 47-65.
- 7) 이강칠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서울: 현암사, p. 50 외 다수.
- 8) 太宗實錄 卷23 12年 2月 戊午 1:623d, 이후 실록 원전의 표기는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은 탐구당에서 간행한 실록 영인본의 권수 나타내며 [623]은 쪽수를, 그리고 [d]는 반책(半冊) 단위를 중심으로 구분한 해당 면(面)에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 9) 申明行外 (1587), 大明會典, 卷六十一 九-十二.
- 10) 金誠一, 鶴峰集, 卷六 十五.
- 11) 成俔 外 (1493), 樂學軌範, 卷九 三.
- 12) 李恩珠 (1998),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服飾文化研究, 6(2), pp. 127-140.
- 13) '흑의'중에는 '무양흑단령(無揚黑團領)', '무양적색흑의(無揚赤色黑衣)', '무양적색단령(無揚赤色團領)' 등이 있는데 이는 백관이 극상(國喪) 중 담계(禫祭)에서 재기(再期)까지 입는 또 다른 백관복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흑의와는 별개의 옷이다.
- 14) 권준희, 이순원 (1999), 조선시대 時服에 관한 연구 (1): 왕과 왕세자의 時服을 중심으로, 服飾, 48, p. 801.
- 15) 世宗實錄, 卷64 16年 5月 戊寅 3:562c.
- 16) 太宗實錄, 卷9 5年 4月 癸酉 1:324a.
- 17) *ibid.*, 卷59 15年 3月 乙亥 3:461a-b.
- 18) *ibid.*, 卷111 28年 1月 辛卯 4:652c.
- 19) *ibid.*, 卷11 6年 3月 己酉 1:351c.
- 20) *ibid.*, 卷11 6年 3月 己酉 1:351c.
- 21) 世宗實錄, 卷67 17年 3月 庚寅 3:619b-c.
- 22) *ibid.*, 卷132 五禮儀 嘉禮 迎勅書儀.
- 23) 太祖實錄, 卷6 3年 6月 己巳 1:63c.
- 24) 太宗實錄, 卷21 11年 4日 丙辰 1:580d.
- 25) *ibid.*, 卷30 15年 11月 壬戌 2:92c.
- 26) *ibid.*, 卷32 16年 7月 丙午 2:129a.

- 27) *ibid.*, 卷35 18年 4月 乙未 2:217d.
 28) 世宗實錄, 卷3 1年 1月 甲寅 2:297b.
 29) *ibid.*, 卷26 6年 10月 甲寅 2:630d, 卷43 11年 2月 辛巳 3:165. 단, 동왕 11년 기록에는 짙은 색을 착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30) *ibid.*, 卷132 嘉禮 常參儀.
 31) 世宗實錄, 卷一百 二十五 b1.
 32) *ibid.*, 卷111 28年 1月 辛卯 4:652c-d.
 33) 成宗實錄, 卷214 19年 3月 乙酉 11:321d.
 34) 端宗實錄, 卷11 2년 5월 壬子 6:682a-b.
 35) *ibid.*, 卷11 2년 7月 丙子 8:587d.
 36) 成宗實錄, 卷18 2年 2月 戊戌 11:192c.
 37) *ibid.*, 卷23 3年 10月 丙戌 8:691d.
 38) *ibid.*, 卷24 3年 11月 甲辰 8:694d.
 39) *ibid.*, 卷270 23年 10月 戊申 12:232b, 中宗實錄 卷10 5年 3月 癸亥 14:416.
 40) 世宗實錄, 卷109 27年 8月 丁未 4:632a.
 41) *ibid.*, 卷107 27年 3月 丙子 4:609b.
 42) 成宗實錄, 卷185 16年 11月 戊辰 11:77a.
 43) 端宗實錄, 卷11 2년 5월 壬子 6:682b.
 44) 宣祖實錄, 卷138 34年 6月 甲戌 24:263d.
 45) 成宗實錄, 卷185 16年 11月 戊辰 11:77a.
 46) 이은주 (1999). *op. cit.*, pp. 125-126. 아청색(혹색)은 조선 전기의 흑단령 색상이다.
 47) 燕山君日記, 卷34 5년 7月 戊辰 13:368d.
 48) 端宗實錄, 卷11 2年 6月 壬午 6:685b, 2年 12月 丙戌 6:713d.
 49) 하명은 (2004). 조선시대 문관 흉배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50) 신숙주 초상화를 제외하고는 흑단령 이외에 흉배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역사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1) 成宗實錄, 卷178 16年 潤4月 己亥 11:12a.
 52) 민족문화추진회 (1971). 국역 대동야승2. p. 550.
 53) 成俔 外 (1493). *op. cit.*, 卷二 十二 時用殿庭鼓吹. 『악학궤범』에는 협률랑(協律郎)이 전정고취(殿庭鼓吹)에서 입는 흑단령을 '시복'으로 표현하고 있다.
 54) *ibid.*, 卷60 11年 11月 甲辰 14:29c.
 55) 中宗實錄, 卷34 13年 9月 甲子 15:483a.
 56) *ibid.*, 卷36 14年 6月 辛未 15:543b.
 57) 金誠一. *op. cit.*, p. 15b.
 58) 李晔光 (1614). 芝峰類說. 卷19 服用部 朝章. 黑團領曰時服 紅團領曰常服.
 59) 朝鮮總督府 編 (昭和11). 眉叢日記草, 4, p. 261. 甲戌年(1574, 宣祖7년) 2月 5日.
 60)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壬辰倭亂後 朝士不能具冠袍.
 61) 宣祖實錄, 卷138 34年 6月 甲戌 24:264a.
 62) 국립진주박물관 (1997). 임진왜란, p. 95.
 63)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1).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p. 13.
 64) 湖巖美術館 (1996). 朝鮮前期國寶展, p. 92.
 65) 朝鮮總督府 編 (昭和11). *op. cit.*, p. 347. 甲戌年(1574, 宣祖7년) 4月 28日. ○晴而熱, 五更一點起寢梳洗, 殿坐前二刻....(중략)...以黑團領入參常參, 既出更服紅團領, 入經筵廳... 등
 66) 光海君日記 太白山本, 卷29 2年 5月 癸亥 26:629a-b.
 67) *ibid.*, 卷33 2年 9月 庚戌 27:5c.
 68) *ibid.*, 卷46 3年 10月 己丑 31:658c.
 69) 이강칠 외 (2003). *op. cit.*, p. 143.
 70) 윤진영 (2003). 효종어제회우시회도(孝宗御題喜雨詩會圖). 문헌과해석, 통권22호, p. 138.